

#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73호

## 행정처분(과태료) 사전통지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(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(2명)

성명	소재지	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이○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우○정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
###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처분의 원인사실 : 이수기한 내 교육·훈련 미이수 혐의
- 과태료 250,000원(법정기준 500,000원, 1/2감경) \* 자진납부 기한내 : 200,000원
- 근거법령 :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(과태료), 시행령 제121조제1항(과태료의 부과기준)

### 3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4. 5. 13. (월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
연락처 : 02-2110-6725 / 팩스 : 02-2110-0682 / 전자우편 : leey051@korea.kr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### 4. 안내사항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,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-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